

# 「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### 2. 제안이유

- 「도봉국민체육센터」 다목적체육관을 체력단련실로 용도 변경함에 따라 사용료 규정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관내 체육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- 도봉국민체육센터 사용료 규정 정비(안 별표 2)
  - 1) 대인 사용료에 관한 사항
    - 다목적체육관(배구장) 삭제 및 체력단련실 신설
  - 2) 전용·부대시설 사용료 삭제
-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(안 제3조~제5조, 제7조~제11조, 제13조, 제15조, 제17조)

#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 - 「지방자치법」
  -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
-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본 조례안은

- 도봉국민체육센터 3층 다목적체육관을 체력단련실로 리모델링함에 따라 사용료 규정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### ○ 검토 결과,

- 생활체육 수요 확대와 이용 편의성을 고려할 때 체력단련실 신설에 따른 사용료 규정 정비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도봉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의 기존 대관 이용실적이 저조하였던 점을 고려하면, 체력단련실 또한 초기 이용객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, 사용료가 민간 수준과 유사하게 책정되어 있어 가격 경쟁력이 크지 않은 만큼 이용률이 저조할 가능성이 있음.
- 개관 초기 적극적인 홍보와 프로그램 기획을 통해 시설 접근성을 높여 이용자 기반을 확보하고, 운영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용객 만족도 및 수입·지출 구조를 분석하여 운영 효율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